



제418회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
■ 윤후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025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전문위원 박 동 찬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윤후덕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4. 6. 27.
3. 회 부 일 : 2024. 6. 2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상관의 성추행과 은폐 시도 등으로 인하여 여군 중사가 자살한 사건 이후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성범죄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지만, 상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는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에 비추어 진급이나 장기복무심사 등 군복무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상관이 성범죄의 가해자가 될 경우 피해자는 사실상 제대로 저항은 물론 신고도 하지 못하기 때문임.

이에 상관이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죄질에 따라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여 군대 내에서의 상관에 의한 성폭력을 근절하려는 것임(안 제92조의9 신설).

Ⅲ. 검토의견

1.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 개정안은 상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군형법」 상 강간죄, 유사강간죄, 강제추행죄, 준강간·준강제추행죄를 범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추행죄, 강간 등 상해·치상죄 또는 강간 등 살인·치사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안 제92조의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92조의9(상관이 범한 성범죄에 대한 형의 가중) 상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제92조, 제92조의2부터 제92조의8까지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다.

나. 검토의견

- 현행법 제92조(강간), 제92조의2(유사강간), 제92조의3(강제추행), 제92조의4(준강간, 준강제추행), 제92조의5(미수범), 제92조의6(추행), 제92조의7(강간 등 상해·치상), 제92조의8(강간 등 살인·치사)은

군인 등¹⁾에 대하여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강간과 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음.

< 형법과 군형법의 주요 성범죄 법정형 비교 >

구 분	형법 제32장	군형법 제15장
강간	제297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92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유사강간	제297조의2,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92조의2,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제추행	제298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92조의3, 1년 이상의 유기징역
강간 등 상해·치상	제301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92조의7,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강간 등 살인	제301조의2,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92조의8, 사형 또는 무기징역
강간 등 치사	제301조의2,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92조의8,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1)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轉換服務)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軍籍)을 가진 군(軍)의 학교의 학생·생도와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在營) 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보충역 및 전시군로역인 군인

제60조(직무수행 중인 군인등에 대한 폭행, 협박 등) ① 상관 또는 초병 외의 직무수행 중인 사람(군인 또는 제1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한한다. 이하 "군인등"이라 한다)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 해당 조문은 군대 내 여성 군인의 증가와 상명하복의 위계질서라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군내 성폭력범죄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됨에 따라 2009년에 도입되었음.²⁾

□ 그러나 최근까지도 폐쇄적이고 엄격한 상명하복 체계가 유지되는 군 조직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여전히 상관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바, 상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 그 처벌 수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참고로, 현행 「군형법」은 제92조의3(강제추행)과 제92조의6(추행)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강간·추행에 관한 처벌 규정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음. 다만, 군인 등이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추행죄를 범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303조³⁾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함) 제10조⁴⁾의 적용을 받게 됨.

□ 이에 개정안은 상관이 지위를 이용하여 현행법에 따른 강간과

2) 대법원 2022. 4. 21. 선고 2019도3047 전원합의체 판결

3) 「형법」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①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간음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자가 그 사람을 간음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①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추행의 죄를 범하는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임.

군인 간 성범죄는 군 조직 내 상명하복의 엄격한 위계질서를 이용하여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이며, 군 조직 내 성범죄는 군 기강 확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따라 우월한 지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군내 성범죄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다만, 개정안에 관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첫째, 개정안은 군인 등에 대하여 「형법」상 강간·추행죄를 범한 경우 가중하여 처벌하는 현행법상 규정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다시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인데, 이처럼 이중가중 형식을 취하는 경우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정형과의 형벌 체계상 균형이 훼손될 우려가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강간·유사강간죄의 경우, 「군형법」상 군인 등을 대상으로 하는 강간·유사강간(5년 이상의 유기징역, 3년 이상의 유기징역)보다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등 강간·유사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이 그 처벌 수준이 높음.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상관이 지위를 이용한 강간의 법정형(7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은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등 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보다 하한이 높은 반면, 유사강간의 경우(4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 등 유사강간(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보다 처벌 하한이 낮게 규정됨.

< 법률 간 형벌체계 비교 예시 >

구 분	형 법	군형법	개정안	성폭력처벌법
강간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92조)	7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	주거침입 등 강간, 장애인에 대한 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3조, 제6조)
유사강간	2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297조의2)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92조의2)	4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	주거침입 등 유사강간: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3조) 장애인에 대한 유사강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제6조)
강제추행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제298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제92조의3)	1년 6개월 이상의 유기징역	주거침입 등 강제추행: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제3조) 장애인에 대한 강제추행: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제6조)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제301조)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제92조의7)	무기 또는 10년 6개월 이상의 징역	주거침입 등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8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상해·치상: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8조)
강간 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301조)	사형 또는 무기징역 (제92조의8)	사형 또는 무기징역	주거침입 등 강간 등 살인: 사형 또는 무기징역(제9조)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살인: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9조)
강간 등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301조의2)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제92조의8)	사형, 무기 또는 15년 이상의 징역	장애인에 대한 강간 등 치사: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제9조)

○ 또한, 「성폭력처벌법」상 장애인에 대한 성범죄와 「군형법」상 군인 등을 상대로 하는 성범죄의 법정형을 비교해보면, 강간, 유사강간, 강제추행,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의 경우 모두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군인 등을 상대로 하는 경우보다 처벌 수준이 높거나 동일함. 그러나, 개정안에 따르면 군인 등을 대상으로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강간,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중하거나 같으나, 유사강간, 강제추행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보다 경한 것으로 나타남.

□ 둘째, 제안이유에 따르면 개정안은 상관이 명령복종 관계에 있는 직속 부하에 대해 강간죄 등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 가중 처벌하려는 취지로 보이나, 현행법상 “상관”⁵⁾에는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준상관(상위 계급자 및 상위 서열자)도 포함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통해 죄형법정주의가 적용되는 형벌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참고로, 국방부는 군대 내 상관에 의한 성범죄 발생 시 엄중하게 처벌될 필요성이 있다는 개정이유에 대해서는 동의하나,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의 경우 이미 가중처벌되고 있다는 점, 군형법상 성범죄도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특정

5) 「군형법」 제2조(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

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점, 개정안에 따르면 하한까지 가중처벌이 가능하게 되는 점, 균형법상 상관은 상관과 준상관을 모두 포함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형벌체계상 균형성·형평성 등에 비추어 신중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051